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39호 2014. 8. 18.(월)

선	기관의 장
람	

【조 례】

【규 칙】

【훈 령】

【예 규】

【고 시】

제2014-113호 소하천의 지정(폐지)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1

【공 고】

제2014-1052호 공인 신조 공고 3

제2014-1059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4

제2014-1062호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9

제2014-1063호 공주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9

제2014-1064호 보상협의 통지문 공시송달(공주의료원 이전신축 민간투자사업) 34

회 람							
--------	--	--	--	--	--	--	--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담당관 ☎ 840-2051)

《 시 보 발 행 안 내 》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또는 수시 발행되오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는 시산하 행정기관 및 이·통장님에게 배부됩니다.
이·통장님께서서는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이웃 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 편철 하시어 1년 동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의 지정(폐지)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고시 제2014- 113호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폐지)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8일

공주시장 (직인)

1. 정정내용

○ 소하천 지정(폐지) 내용

수계(水系) 명	소하천명	소하천 구간		소하천의 총길이 (m)	지정(변경· 폐지) 사유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대교천	백산천	장군면 송학리 554-13	의당면 가산리 50	730	전체구간
		장군면 송학리 554-13	의당면 가산리 332-3	520	세종시 구간으로 경지정리 지역으로 소하천 미지정
		의당면 가산리 332-3	의당면 가산리 50	210	공주시 구간으로 소하천 지정기준에 부적합

열람서류: 소하천 위치도(축척 5천분의 1 ~ 5만분의 1 지형도)

210mm×297mm [백상지 80g/m² (재활용품)]

○ 지형도면 변경 내용

종 류	하천명	변경내용	지형도면 변경사유
소하천 지정 폐지	백산천	“소하천 지정(폐지)내용 참조”	소하천 지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소하천 지정 폐지

2. 변경사유 : 의당복합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 백산천 공주시 구간 (210m)이 소하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소하천의 지정(폐지) 및 지형도면 등재 내용 변경

3. 기타사항 : 열람서류(공주시 안전관리과)

공인 신조 공고

공주시 공인조례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신조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공 주 시 장

1. 공인 신조 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2. 사용개시일 : 2014. 8. 4.
3. 신조 공인 인영

부서명	공인명	규격	인영	비고
안전관리과	공주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인	3.0cm×3.0cm (정방형) 훈민정음체		

공주시 공고 제2014 - 1059 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 일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제증명과 인·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를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6조(수수료의 반환) 규정에 의거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고 있음은 행정편의적이고 민원인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기납부한 수수료의 합리적 환불규정을 마련하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정보공개 수수료규정 일부를 개정하며 다른 법령 개정에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6조(수수료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 를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가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증명 등이 발급되어 증명 날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로 개정

○ 조례 제4조(기준)

“ 본적 · 주소 ” 를 “ 등록기준지 · 주소 ” 로 용어정비

○ 별표 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준하여 수수료 규정
→시행규칙에서는 수수료를 조례로 위임하고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14년 9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 사항 등
- 4)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우)314-70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 세무과

○ 전화: 041)840-8356, FAX: 041)840-2428

5)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 세입담당 이영희(041-840-835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본적·주소”를 “등록기준지·주소”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수수료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가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증명 등이 발급되어 증명 날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정보공개수수료

공개 대상	공개 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 마다 5,0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제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 마다 5,000원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평면 화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1편이 1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켤(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켤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1컷마다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제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사진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 × 5" 50원 5" × 7" 100원 8" × 10" 150원 ○ 복제 -1건(1MB기준)1회: 200원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입 법 예 고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년 8 월 18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민원과를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목적으로 위촉하는 민원상담위원의 자격 규정에 민원상담위원의 자격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불합리한 규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명예직인 상담원의 자격 기준을 현실에 맞게 규제 완화

2. 주요내용

- 조례 제2조(위촉) : 일부 개정

“민원과에 약간의 상담위원을 두되,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를

“민원과에 약간의 공주시 민원상담위원(이하 “상담위원” 이라한다)을 두되, 법률·세무·행정·노무·건축 분야 등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로 개정. (안 제2조)

○ 조례 제3조(자격) : 전체 삭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법률분야 : 공주시 고문변호사 또는 일반변호사
2. 세무분야 : 세무사, 회계사 또는 지방세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전직 6급이상 공무원으로 세무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주민의 신망이 있는 자
3. 행정분야 : 전직 6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주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
4. 노무분야 : 공인 노무사
5. 건축분야 : 건축사

○ 조례 제4조(결격사유) : 전체 삭제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무원

○ 그 밖의 용어 및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등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민원과(민원행정담당)

주 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14-702

전 화 : 041)840-8186, FAX : 041)840-2312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 을 “조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서 공주시청” 으로, “민원상담위원(이하 “상담위원” 이라 한다)” 을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민원과에 약간의 공주시 민원상담위원(이하 “상담위원” 이라 한다)을 두되, 법률, 세무, 행정, 노무, 건축분야 등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2조제2항 중 “법률·세무·행정·노무·건축·기타” 를 “법률·세무·행정·노무·건축·그 밖의” 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원서식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보조

제5조제3호 중 “경우” 를 “경우에는” 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근무시간)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범위안” 을 “범위” 로 한다.

제11조 중 “의해” 를 “따라”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한 민원상담위원(이하 “상담위원”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조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서 공주시청----- -----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 ----- -----.</p>
<p>제2조(위촉) ① 민원과에 약간의 상담위원을 두되,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제2조(위촉) ① 민원과에 약간의 공주시 민원상담위원(이하 “상담위원”이라 한다)을 두되, 법률, 세무, 행정, 노무, 건축분야 등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중에서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p>
<p>② 상담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원안내 및 법률·세무·행정·노무·건축·기타 생활민원의 무료상담 등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p>	<p>② ----- -----법률·세무·행정·노무·건축·그 밖의 ----- -----.</p>
<p>제3조(자격)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위원의 자격은 다음</p>	<p><삭 제></p>

과 같다.

1. 법률분야 : 공주시 고문변호사 또는 일반변호사

2. 세무분야 : 세무사, 회계사 또는 지방세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전직 6급이상 공무원으로 세무행정 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주민의 신망이 있는 자

3. 행정분야 : 전직 6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행정 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주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

4. 노무분야 : 공인 노무사

5. 건축분야 : 건축사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무원

제5조(업무) 상담위원은 다음 각호

<삭 제>

제5조(업무) -----

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략)

2. 노약자, 부녀자 등을 위한 민원무료대서

3. 민원상담활동 과정에서 행정제도 및 운영에 관한 개선의견이 있는 경우 관련 부서에 건의

4. 5. (생략)

제7조(근무시간) 행정분야 상담위원은 공주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같이 하여 상근하게 하고, 법률·세무·노무 및 건축분야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은 필요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해촉) 상담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3. 4. (생략)

제10조(실비보상) 상근 상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1. (현행과 같음)

2. 민원서식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보조

3. -----

----- 경우에는 -----
-

4. 5. (현행과 같음)

제7조(근무시간)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해촉)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4. (현행과 같음)

제10조(실비보상) -----
----- 범위 -----

-----.

제11조(기록유지) 상담위원은 별
지 서식에 의해 민원상담 내용
등을 기록 관리한다.

제11조(기록유지) -----
----- 따라 -----
-----.

[관계법령발췌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민원실) ① 민원실의 장은 민원사무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실을 설치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주시 공고 제2014-1063호

『공주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공 주 시 장 오 시 덕

공주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1호)이 2014년에 개정되고, 지방 규제 개혁 추진 계획에 따라 「공주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의 현행규정 내용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변속차로 설치 기준 (안 제7조 제1호와 관련한 별표 5)

[별표 5] - 현행, 개정, 신설별 비교표

변속차로 최소길이(제7조제1호관련)

(단위 : 미터)

구 분	시 설	주차대수 (가구수)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제외)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현 행	1. ~ 3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개 정	1. ~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4. 사도·농로·마을진입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15) [10]	40(30) [15]	10(10) [10]	20(20) [20]
개 정	4. 사도	-	20(15) [10]	40(30) [15]	10(10) [10]	20(20) [20]
	5. 농로·마을진입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 : 최소3m)	
현 행	5. 판매시설 및 일반음식점 등	10대 이하	20(15) [10]	40(30) [15]	10(10) [10]	20(20) [20]
		11 ~ 30대	30(20) [15]	60(40) [25]	10(10) [10]	20(20) [20]
		31대 이상	45(30) [20]	90(65) [40]	15(10) [10]	30(20) [20]
개 정	6. 판매시설,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업무시설, 근린시설 및 기타시설등	10대 이하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 : 최소3m)	
		11 ~ 30대	20(15) [10]	40(30) [15]	10(10) [10]	20(20) [20]
		31대 이상	30(20) [15]	60(40) [25]	10(10) [10]	20(20) [20]
현 행	6. 주차장·운수시설·의료 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 ·집회시설 및 위락시설등	30대 이하	30(20) [15]	60(40) [25]	10(10) [10]	20(20) [20]
		31대 이상	45(30) [20]	90(65) [40]	15(10) [10]	30(20) [20]
개 정	7. 주차장·운수시설·의료 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 ·집회시설 및 위락시설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 분	시 설	주차대수 (가구수)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제외)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현 행	7.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20(15) [10]	40(30) [15]	10(10) [10]	20(20) [20]
		21 ~ 50대	30(20) [15]	60(40) [25]	10(10) [10]	20(20) [20]
		51대 이상	45(30) [20]	90(65) [40]	15(10) [10]	30(20) [20]
개 정	8. 공장	20대 이하	20(15) [10]	40(30) [15]	10(10) [10]	20(20) [20]
		21 ~ 50대	30(20) [15]	60(40) [25]	10(10) [10]	20(20) [20]
		51대 이상	45(30) [20]	90(65) [40]	15(10) [10]	30(20) [20]
현 행	8. 주택진입로 등	(5가구 이하)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 : 3m)	
		(100가구 이하)	30(20) [15]	60(40) [25]	10(10) [10]	20(20) [20]
		(101가구 이상)	45(30) [20]	90(65) [40]	15(10) [10]	30(20) [20]
개 정	9. 주택진입로 등	(10가구 이하)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 : 최소3m)	
		(11~100가구 이하)	30(20) [15]	60(40) [25]	10(10) [10]	20(20) [20]
		(101가구 이상)	45(30) [20]	90(65) [40]	15(10) [10]	30(20) [20]

- 주 : 1) 설계속도 80km/h, 4차로 이상 기준임. 다만, ()는 60km/h, []는 50km/h 기준임.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값을 기준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다.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건설과 (주소 : 314-090 공주시 봉황로 1)

o 전화 : 041-840-8388

o FAX : 041-840-2324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4조” 를 “제52조” 로 한다.

제3조 중 “제13조, 제14조” 를 “제16조, 제17조” 로 한다.

제4조 중 “제64조” 를 “제52조” 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변속차로 최소길이(제7조제1호관련)

(단위 : 미터)

시 설	주차대수 (가구수)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제외)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1. 공단진입로 등	-	45(30) [20]	90(65) [40]	15(10) [10]	30(20) [20]
2. 휴게소·주유소 등	-	45(30) [20]	90(65) [40]	15(10) [10]	30(20) [20]
3.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20) [15]	60(40) [25]	10(10) [10]	20(20) [20]
4. 사도	-	20(15) [10]	40(30) [15]	10(10) [10]	20(20) [20]
5. 농로·마을진입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 : 최소3m)	
6. 판매시설,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업무시설, 근린시설 및 기타 시설등	10대 이하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 : 최소3m)	
	11~30대	20(15) [10]	40(30) [15]	10(10) [10]	20(20) [20]
	31대 이상	30(20) [15]	60(40) [25]	10(10) [10]	20(20) [20]
7. 주차장·운수시설·의료 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집회시설 및 위락시설등	30대 이하	30(20) [15]	60(40) [25]	10(10) [10]	20(20) [20]
	31대 이상	45(30) [20]	90(65) [40]	15(10) [10]	30(20) [20]
8. 공장	20대 이하	20(15) [10]	40(30) [15]	10(10) [10]	20(20) [20]
	21~50대	30(20) [15]	60(40) [25]	10(10) [10]	20(20) [20]
	51대 이상	45(30) [20]	90(65) [40]	15(10) [10]	30(20) [20]
9. 주택진입로 등	(10가구 이하)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 : 최소3m)	
	(11~100가구 이하)	30(20) [15]	60(40) [25]	10(10) [10]	20(20) [20]
	(101가구 이상)	45(30) [20]	90(65) [40]	15(10) [10]	30(20) [20]

주 : 1) 설계속도 80km/h, 4차로 이상 기준임. 다만, ()는 60km/h, []는 50km/h 기준임.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값을 기준으로 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신청서 작성</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right: 10px;"> 제출 교부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10px;">접 수</div> <div style="margin: 0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10px;">현지조사</div> </div> </div> <div style="margin-left: 150px; margin-top: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10px; margin-left: 100px;">검 토</div> <div style="margin-left: 150px; margin-top: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10px; margin-left: 100px;">결 재</div> <div style="margin-left: 150px; margin-top: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10px; margin-left: 100px;">허 가 서</div>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 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 52 조 ---- ----- ----- ----- ----- ----- ----- ----- ----- -----</p>
<p>제2조(정의) 1. ~ 4. 생략</p>	<p>제2조(정의) 1. ~ 4. (현행과 같음)</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 제14조에 따른 시·군도 중 2차로 이상의 도로와 법 제20조에 따른 공주시 관할 국도, 지방도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 통로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 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따른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p>	<p>제3조(적용범위) ----- ----- -----제1 6조, 제17조----- ----- ----- ----- ----- ----- -----</p>

한다.

-----.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6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 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

---제52조-----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1. ~ 7. (생략)

제5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1. ~ 7. (현행과 같음)

제6조(연결로등의 포장 등) ① ~ ② (생략)

제6조(연결로등의 포장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변속차로) 1. ~ 5. (생략)

제7조(변속차로) 1. ~ 5. (현행과 같음)

제8조(배수시설) 1. ~ 4. (생략)	제8조(배수시설)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분리대) 1. ~ 7. (생략)	제9조(분리대) 1. ~ 7. (현행과 같음)
제10조(연결로 등의 길어깨) 1. ~ 4. (생략)	제10조(연결로 등의 길어깨) 1. ~ 4. (현행과 같음)
제11조(부대시설) 1. ~ 2. (생략)	제11조(부대시설) 1. ~ 2.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사시행) (생략)	제12조(공사시행) (현행과 같음)
제13조(시행규칙) (생략)	제13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문]

【도 로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도로망“이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로망을 말한다.
4. “국가간선도로망“이란 전국적인 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노선으로서 제10조 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를 말한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6.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7.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補修)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8. “도로의 유지·관리”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도로관리(경미한 도로의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한다) 활동을 말한다.

9.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그 효용을 함께 발휘하는 독, 호안(護岸),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가로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16조(시도의 지정·고시)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은 특별자치시, 시 또는 행정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시도를 지정·고시한다.

제17조(군도의 지정·고시) 군수는 해당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군도를 지정·고시한다.

1.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제23조(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도: 「도로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2. 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보상협의 통지문 공시송달

공익사업(공주의료원 신축이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통지문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발송한 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주무관청 : 충청남도지사

시 행 자 : 주)공주메디컬센터 대표

1. 사 업 명 : 공주의료원 이전신축 민간투자사업(BTL)
2. 주무관청 : 충청남도지사
3. 사업시행자 : 주)공주메디컬센터
4. 공시대상 소유자 및 관계인 : 별항(공시송달대상자 목록)
5. 공시송달 사유 : 주소 및 수취인 불명 등
6. 공시기간 : 2014.8.14. ~ 8.31
7. 편입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비고
공주시 응진동	268-2	구거	178m ²	

8. 보상협의 통지문 : 별첨(계시생략 - 충청남도 식의약안전과, 공주메디컬센터 보관)
 - 소유자 및 관계자는 공시기간 내에 위 보관 장소에서 소유자 등을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보상협의통지문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통지문이 소유자 등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

《 공시송달 대상자 》

송달받을 사람		송달사유	비고
주 소(송달주소)	성명		
서울 도봉구 쌍문동 273-3	김중석	주소불명	소유자
충남 천안시 원성동 629-9	김승태	주소불명	관계인
대전시 서구 괴정동 75-15	김경자	주소불명	관계인
서울 서초구 잠원로 37-48(잠원동 신반포4차@201-1004호)	김경태		관계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 124	김영태	주소불명	관계인
서울 은평구 신사동 7-11	김광태	주소불명	관계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33번길 34 301동402호 (송내동 푸른빌아파트)	김용권		관계인
서울 마포구 서교동 389-20	김인자	주소불명	관계인
주소미상	김미대자	주소불명	관계인
주소미상	김영자	주소불명	관계인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78가길 17 A동 702(광장동 현대리버빌)	김길태		관계인
부산시 수영구 황령산로 3(남천동)	김명희		관계인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9 D동 707(여의도동 삼익아파트)	김순태		관계인
충남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279-55	김성태		관계인